

이사회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이사회는 의장은 제 7 조 제 1 항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 6 조(이사회 개최)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1 월, 4 월, 7 월, 10 월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 7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7 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 한다. 단,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 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의 2(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결권, 의결방법)

①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③이사회회의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권 제한)

①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①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4. 주식의 소각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9.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1.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 규정의 개정
13.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14.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5.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6.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7. 자본금의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8. 관계회사 주식(자사주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19. 상법 제 397 조의 2 의 승인사항 및 제 398 조의 거래
 2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21.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22.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위임)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이사이외의 자의 출석)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6 조(주관부서)

- ①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②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5.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